



Korean Tax Newsletter

2025 년 6 월

CONTENTS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공포

예규판례

○ 법원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분사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개발사업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매출처로부터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4 호의 '산업단지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사원

-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 이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기획재정부

-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 행정안전부

-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연협력계약 등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여부
 - 2 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공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5 개의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6.2. ~ 6.17.)하였으며,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관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보\(Link\)](#)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중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5609 호, 2025. 6.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 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을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 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으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현지숙식비, 숙소·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관보\(Link\)](#)

-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 일부를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관보\(Link\)](#)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5608 호, 202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관보\(Link\)](#)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서식에 수시부과세액 기재란을 추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관보\(Link\)](#)

- 투자조합이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예규판례

[법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6.12. 선고 2024 두 66181 판결, (일부)파기환송)

■ 쟁점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안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예술창작품에 관한 제작·설치 및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임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임.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음(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 두 4110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6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 조 제 1 호는 예술창작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창작품의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예술창작 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건축주인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1. 18. 법률 제 187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 조 제 1 항을 준수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이에 관한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당시로서는 예술창작품 자체와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놓고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이면서 단일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해진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컸는바,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 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

으로 애당초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고 만연히 단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분사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 중 3578, 2025.2.27.,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

■ 사안

청구법인은 2017.9.1. A 주식회사(이하 “A”)의 기전팀(사업부)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비상장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 설비제어, 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2023.12.26.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6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10 항 제 1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21 항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50%)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4.19.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A이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A에 대한 국내 매출비중이 97%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해당 사업의 영업활동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산·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한 효과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음

결정요지

조특법 제 6 조 제 10 항 제 1 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21 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제 1 호),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제 2 호)’에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살피건대, 중소기업 창업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유권해석 자료(창업정책과, 000, 2023.11.21.)에 의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 5 조 제 21 항 규정 체계와 유사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2020.10.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조(사업분리의 요건) 제 2 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기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직원이 승계하는 경우 분리하는 기업의 임·직원 중 1 인이 인수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임·직원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인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최대가 되는 때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는바, 종업원 지주제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인 A 과 사업분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대표이사이며, 임·직원들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관련 규정에 따른 창업의 법적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2017.6.22.) 후 3 년 이내에 기술평가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2020.5.23.)을 받았고, 조특법 제 6 조 제 10 항 제 1 호 나목 및 조특법 시행령 제 5 조 제 21 항에 의거 법률상 형식적 창업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청구법인이 분사창업 당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실질적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이나 투자효과, 매출구조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 기존 사업부서의 자산과 인원을 어느 정도 승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분사창업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전제가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분사창업에 있어 실질적인 창업을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사창업 당

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주주 포함)이 피분사기업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경영의 주체가 되었는지 여부,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나 투자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기존의 피분사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차별화된 매출구조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창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신규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피분사기업인 A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이 청구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인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분사 이후 신규 고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사창업 이후 2020 년 말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투자한 유·무형자산이 분사로 승계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취득자산 가액의 90%에 달하고, 청구법인의 분사 이후 기업활동 연혁과 내용(신규사업 세부내역서), 연간 해외매출액 비중 현황표 등에 의해 매출구조의 변경(해외매출 비중의 경우 분사창업 당시 0.8%→39% 상승)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사 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2항 및 제10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재개발사업조합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 지 4645, 2025.3.26., 결정)

■ 쟁점

재개발사업조합인 이 건 조합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 조의 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일원 토지 44,015 ㎡(이하 “이 건 사업부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이 건 사업을 진행하여 2022.7.26. 준공인가를, 2022.12.21.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당초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24,615.048 ㎡ 중 일반분양분 토지에 해당하는 14,301.14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 이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조합원들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7.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 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 두 7392 판결)으로, 「지방세법」 제 7 조 제 8 항에서는 「주택법」 제 11 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 조 제 3 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주택조합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의 2에서는 법 제 7 조 제 8 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조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인 청구법인이 행한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정비사업은 조합원 소유 토지, 제 3 자 등 매입토지, 무상양여 토지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사업의 결과 그 중 어느 부분이 조합원, 조합원 외의 자, 기부채납 부지 등에 실지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계산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하고, 사업시행자가 제 3 자 매입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조합원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당초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24,615.048 ㎡)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 고시 이후 조합 소유의 토지(25,581.48 ㎡)에서 조합이 유·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19,415.652 m²) 면적을 차감한 6,615.828 m²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6,615.828 m²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매출처로부터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4 서 2795, 2025.5.27., 경정)

■ 쟁점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매출처로부터 반품 받은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그 외 의약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출 품목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경로는 약국과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약국·병원 유통경로(직거래처)와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는 도매 유통경로가 있음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사업연도 중 도매상, 약국 및 병원 등의 매출처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반품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반품(이하 “쟁점 1 반품거래”)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기처리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반품(이하 “쟁점 2 반품거래”, 쟁점 1 반품거래와 합하여 “쟁점반품거래”)받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는 차감한 부분을 포함하여, 쟁점반품거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

처분청에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 두 18000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설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2.9.27. 선고 2010 두 1432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반품거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반품거래는 어느 특정업체에게 차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취한 통상적인 영업정책이자 비용 지출로 보이는 점, 쟁점반품거래 금액은 이미 거래관계가 존재하던 특정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유지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매출의 창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사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반품거래는 제약업계에서 청구법인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이전 공급분의 경우 반품을 제한하는 약정조차도 없었고(다만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의 제품에 대한 폐기 분류기준만 존재), 2021년 이후에 체결한 거래계약서상 반품조항인 제 11 조 제 3항을 살펴보면 공급자와 수급자는 상호합의 하에 반품가격과 반품요청사유도 추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상 사용기간이 6개월(12개월) 미만이어도 상호합의하에 반품거래를 할 수 있어 보이고 반품의 발생 경위나 성질, 빈도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반품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반품거래 비용을 접대비(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쟁점반품거래가 「약사법」 제 47 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약사법」 제 47 조를 위반 시 같은 법 제 94 조 제 1 항에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반품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거나 행정처분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약사법」을 위반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 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 두 777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반품거래에 대한 제반사정만으로는 그 손금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5 항 제 2 호에서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반품거래를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을 환수하고 그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처의 귀책사유 등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제품이 환수되었음에도 ‘환입된 재화’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1 반품거래 금액 및 쟁점반품거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4 호의 '산업단지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 지 0381, 2025.5.29., 취소)

■ 쟁점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처분청은 2019 년도부터 2022 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000 외 18 필지 174,685 m²(화훼산업용지, 첨단산업용지, 주차장용지, 이하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음

처분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되고, 이 건 토지는 산업용지 등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2023.10.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000 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용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용 토지가 될 수 있는 개별적인 토지로서 산업시설용 토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4 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5 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8.12.31. 개정된 같은 항 제 4 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란 산업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용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

우리 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 조 제 7 항 제 4 호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 두 15760 판결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점(조심 2021 지 0914, 2023.5.4.),

아울러 우리 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000 토지 101,462.9 m²를 취득한 주식회사 AAA 가 해당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이미 매각(공급 완료)했기 때문이므로 위의 결정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감사원]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 이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22-심사-1809, 2025.5.15., 경정)

■ 쟁점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 이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사안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일정 기간 내에 약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이하 “행사가격”)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이하 “신주발행형”)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이하 “자기주식교부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행사 시점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행사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음

청구인은 2020. 1. 7. 임직원 9 명이 2017 년과 2018 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450,000 개의 행사차액을 구 「법인세법」(2017. 10. 31. 법률 제 150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 19 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되어 201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당초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2020. 3. 10. 당초 경정청구의 행사차액 중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2017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경정하였으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9 호의 2 가목 1)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을 거부하였음

청구인은 2020. 6. 4. 서울지방법국세청에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국세청은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없다며 같은 해 7. 16. 기각하였음

청구인은 2022. 3. 29. 2021 년에 나온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첨부하여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당초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재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 6. 28.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결정 이후 법해석 변경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재경정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하였음

결정요지

이 사건의 다툼에 대해 살피기 전에 처분청이 이 사건 재경정청구에 대해 ‘각하’ 회신을 한 것이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 ① 구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은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횡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납세의무자에게는 재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는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이고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해당 법인은 이미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실질가치(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획재정부도 행사차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교부할 필요가 없고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관계없이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대상인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기획재정부]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5.3.5.)

■ 질의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회신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법규과-3220, 2024. 12. 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3. 상기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71, 2009.3.23.)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종전 예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건축조합이 상기 제 2 호를 적용받고자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상기 제 2 호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연협력계약 등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50, 2025.4.17.)

■ 질의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교원·학생 또는 일반 창업기업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2 조 제 3 항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 25 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O 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단(이하 ‘쟁점 법인’)은 정관상 설립 목적, 명칭, 조직 등을 비추어 볼때 「산학협력법」 제 25 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산학협력단으로서, 쟁점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교원·학생 또는 일반 창업기업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쟁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학협력법」 제 2 조 제 6 호 라목에서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 24 조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교육기관인 OO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범위로 ① 창업기업 육성 등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운영, ② 대학의 인적 물적 지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 및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 창업인재 양성 및 지역 기반 창업지원 등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산학협력법」 제 24 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이라 봄이 상당하고, 쟁점 법인이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 창업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산학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으로 쟁점법인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쟁점 법인이 산학연협력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업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쟁점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최종 판단은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실시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이행 여부, 실제적 운영 실태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국세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서면-2024-법규법인-4434, 2025.4.17.)

■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의 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미도래 지급이자」가 법인법§28①(3)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를 위해 '21.7 월 설립된 법인으로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특수관계인로부터 000 억원을 차입하였음(건설기간 2022.1.1. ~ 2024.12.31.)
- 당초 차입일은 '21.10.5.이고 만기는 '22.9.30.이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2.5.20. 에 계약을 변경하여 만기를 '25.12.31.로 연장하였음

회신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 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인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손금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49, 2025.5.20.)

■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개요) 자문대상법인은 '20.x.x.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A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21.x.xx. A 법인의 또 다른 완전자회사인 A2 법인이 자문대상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소멸
- (주식의 포괄적 교환) '19.x.x. A 법인이 자문대상법인의 지분 5x.xx%를 취득함에 따라 A 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20.x.xx. A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문대상법인의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A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됨. 한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자문대상법인의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자문대상법인은 해당 자기주식 및 기존 보유 자기주식을 A 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A 법인의 신주를 받았음(이하 '쟁점거래')
- (흡수합병) '21.x. 자문대상법인은 A2 에 흡수합병되어 소멸
- (경정청구)자문대상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제 360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2 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기준-2024-법규법인-0189, 2025.5.28.)

■ 질의

쟁점부칙에 따라 완료기준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통투공제’) 적용 후 경정청구를 통해 ‘19 과세연도에 생산성 향상시설세액공제(‘생시공제’)를 적용받아 다시 진행기준으로 통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A 법인은 생투·통투공제 대상 자산에 2019~2022 년에 걸쳐 투자를 하였으며, 2019 과세연도에 생시공제 미적용으로 쟁점부칙에 따라 완료기준(예외)으로 통투공제를 적용
- 이후, ① 2019 과세연도는 종전 생시공제를 적용하고, ② 2020~2022 과세연도는 쟁점부칙요건 미충족에 따라 통투공제를 진행기준(원칙)으로 적용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제기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2025.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7759 호, 2020.12.29. 개정)부칙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 177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 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